

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. 6. 14 선고 2016가단2624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]

전 문

원고(선정당사자)A

피고1. B

2. C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6. 6. 14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(선정당사자)와 선정자들에게,

가. 아산시 D 임야 542㎡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6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㉠부분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약 190㎡², 같은 도면 표시 7, 8, 12, 13,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㉡부분 비닐하우스 약 50㎡², 같은 도면 표시 14, 15, 16, 17,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㉢부분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창고 약 2㎡², 같은 도면 표시 18, 19, 20, 21,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㉣부분 비닐하우스 약 15㎡를 각 철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하고,

나. 아산시 E 임야 392㎡ 지상 별지 도면 표시 3, 4, 5, 6,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㉤부분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창고 약 70㎡², 같은 도면 표시 8, 9, 10, 11, 12,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㉥부분 비닐하우스 약 100㎡², 같은 도면 표시 22, 23, 24, 25,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㉦부분 철파이프조 함석지붕 단층창고 약 5㎡를 각 철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하고,

다. 공동하여 2015. 7. 15.부터 위 각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77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정성호

별지